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위탁생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 법령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교육 지급경비 반납 사유 발생 시 위탁생 본인과 동시 반납의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항변권이 있는 ‘보증인’으로 대체하여 위탁생 주변 가족·지인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며, 국외 위탁생의 직계 준비속 사망 등 긴급히 단기 일시귀국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교육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군에 단기 일시귀국 승인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군위탁생규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을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제3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를 삭제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의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를 “본인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 제1호의 “제10조 제1항제3호 또는”을 삭제한다. 제3항 “군 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을 삭제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을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도·감독 및 해임에”를 “지도·감독, 일시귀국 및 해임에”로 한다.

군위탁생규정 [별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반 납 액
1. 제1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지급경비 전액</u> <u>(단, 제10조 제1항 5.~6.호의 경우는 지급</u> <u>경비의 100분의 50)</u>
3. 제12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 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20

비고

가.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외화표시 소요 경비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삭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u>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u>	제4조 (군위탁생의 임명) ① 군위탁생은 ----- -----임명한다. <u>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u>
제10조 (해임) ① 임명권자는 군위탁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9.5.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u>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u> 4.~6.(생략)	제10조 (해임) ① ----- -----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u>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계속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삭제)</u>
제12조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이하 이 조에	제12조 (지급경비의 반납조치) ① ----- ----- --- <u>본인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하며,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u>

서 "지급경비"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u>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u> 다만, 지급경비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부사관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반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생략) 2. 수학 중 해임된 사람. 다만, <u>제10조 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에</u>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와 ②(생략) ③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경비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u>군위탁생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u> 반납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경비반납연기(면제)신청서를 소속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생략)	<u>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 ----- 1.(생략) 2.----- 다만, <u>제10조 제1항제3호 또는(삭제) 제11조에</u>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와 ②(생략) ③----- ----- <u>군위탁생 또는 그의 보증인은</u> ----- --- ④(생략)
제13조의 2 (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u>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u>	제13조의 2 (교육이수자의 활용) ----- -----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u> ----- -----.

제14조 (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제8조·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준사관 이상의 군인 및 사관생도에 대한 군위탁생의 임명, 전학등의 허가, <u>지도·감독 및 해임에</u>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 ----- <u>제9조제1항·제3항</u> 및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 ----- -----<u>지도·감독, 일시 귀국</u> 및 해임에 ----- -----.																				
군위탁생규정 [별표] <u>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제1항 관련)</u> <table border="1" data-bbox="215 869 786 1391"> <tr> <th>구분</th><th>반납액</th></tr> <tr> <td>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 전액</td></tr> <tr> <td>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u>지급경비 전액</u></td></tr> <tr> <td>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td></tr> <tr> <td>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의 100분의 20</td></tr> </table> 비고 가.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삭제	구분	반납액	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지급경비 전액</u>	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20	군위탁생규정 [별표] <u>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제1항 관련)</u> <table border="1" data-bbox="818 869 1386 1391"> <tr> <th>구분</th><th>반납액</th></tr> <tr> <td>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 전액</td></tr> <tr> <td>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 전액 (단, 제10조 제1항 5.~6.호의 경우는 지급경비의 100분의 50)</td></tr> <tr> <td>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td></tr> <tr> <td>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td><td>지급경비의 100분의 20</td></tr> </table> 비고 가.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삭제	구분	반납액	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단, 제10조 제1항 5.~6.호의 경우는 지급경비의 100분의 50)	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20
구분	반납액																				
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u>지급경비 전액</u>																				
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20																				
구분	반납액																				
1.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 전액 (단, 제10조 제1항 5.~6.호의 경우는 지급경비의 100분의 50)																				
3.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의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경비의 100분의 2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연 락 처	(02) 748 - 5183